

## 第三分科討論要旨

金興漢(사회자) : 지금부터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梁承圭교수님의 討論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梁承圭(서울대) : 지금 宋교수님과 李辯護士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때문에 저는 몇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法曹敎育과 관련하여 一般的으로 大學은 理論 즉 science 그리고 研修院은 實務 즉 art를 가르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데 法學이란 理論的인면서 實踐的인 學問이기 때문에 敎育의 重點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느 하나만 가지고 法學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大學은 理論, 研修院은 實務 이와같은 생각은 제 오해일지는 몰라도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法曹實務敎育하면 司法研修院의 敎育이 重點的으로 거론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實際 辯護士가 모자라는 現實에서 司法書士, 稅務士, 辯理士와 같은 이론바 準法曹人도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法學敎育을 받지 않은 분들이 法律問題를 다룬다면 國民의 權利와 관련해 볼 때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法曹實務敎育에서는 이들에 대한 敎育問題도 생각하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科目과 관련하여 敎養敎育을 司法研修院에서 實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敎養敎育에 대해 무언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령 大學에서 특별한 討論을 거치지 않고 行政指示에 의해 國民倫理가 필수과목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물론 國民倫理를 가르치는 것이 敎育上 필요하다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사회풍토 아래서는 비록 그 科目을 듣고 學點을 따더라도 그 敎育의 實效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點에서 보면 司法研修院에서 많은 時間을 들여 專門敎育을 시켜야 할텐데 音樂敎育이다 美術敎育이다 하는 全人敎育을 시키는 발상에는 조금 당혹합니다.

그리고 李辯護士님께서 司法研修院에서 碩士學位 수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찬성하는 發言을 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는 現行制度上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司法研修院에서는 大學의 敎育과는 전혀 관계없는 實務敎育을 하고 있는 데 碩士學位까지 준다는 것은 지나친 유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判事·檢事·辯護士를 하는 데 學位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다음에 朴吉俊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朴吉俊(성균관대) : 宋 교수님과 李辯護士님이 평소에 느낀 바를 대체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말과 見解가 다른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宋 교수님께서 根本的인 問題點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法曹實務教育을 위해 法科大學에서 期間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와 같이 별도 機構에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長期的 안목에서 볼 때는 法科大學에서 이것을 擔當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나 다만 현재 各學校가 당면한 여건을 고려할 때 法曹實務教育을 擔當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不可能합니다. 그러므로 暫定的 내지 短期的으로는 現在와 같은 二元的인 教育이 不可避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法曹教育을 二元化한다고 해서 法科大學을 연장할 필요가 없느냐에 대해 宋 교수님은 구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대 등 몇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140학점으로 되어 있어 가르쳐야 할 科目比重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法學教育의 時間배정이 不足한 實情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4年制를 延長하든가 140학점의 履修學點을 150내지 160學點으로 환원시키든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司法研修院教育에 있어서 커리큘럼, 教育方法 등에 관해서는 李辯護士님이 자세히 말씀하셨고 특히 커리큘럼에 관해서는 梁 교수님이 강조하신 대로 教養教育 보다는 法曹의 기술연마, 實務修習에 重點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教養教育은 法曹倫理의 측면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리큘럼 中 하나 感銘받은 것은 特別法을 重點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이는 매우 좋은 것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를 좀더 강화·發展시켜야 할 것이며 여기에 經濟法이나 經濟發展으로 인한 法的 측면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點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 커리큘럼이나 활동관계에서 補充해 드리고 싶은 것은 legal aid를 한 course로 넣는다는가 특별활동(special activity)을 강화하는 방안등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既成法官의 教育에도 여러 活動을 하시는 데 특히 既成法官의 海外研修는 대단히 좋은 현상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海外만 과전할 것이 아니라 國內에서 大學과 制度的인 유대를 맺고 6個月 내지 1年동안 研究를 하신다든가 학생들을 가르쳐 본다든가 데모진압하는 것을 보신다든가 하는 機會를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司法研修院의 학위문제에 대해서는 梁 교수님과 意見을 같이 합니다만 司法研修院의 커리큘럼을 一般大學과 연결시켜 권소르시움 시스템을 통해 學位나 學點을 연결시키는 方法은 검토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李載厚 辯護士님 부탁드립니다.

李載厚(변호사) : 이미 두 분 發表者和 두 분 討論者들께서 法曹教育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 문제에 관해 제 意見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法曹教育이라고 하면 法曹人 養成教育和 法曹人 再教育 이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法曹人 養成에 관해서는 宋교수님 말씀처럼 세계적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이는 根本적으로는 法曹人の 需要·供給과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現在 300名을 司法試驗에서 뽑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하는 意見의 對立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法曹人에 대한 需要가 足하다고 한다면 大學教育은 專門職業教育일 수는 없고 따라서 현재와 같은 二元制度가 不可避하다고 생각합니다.

法曹教育制度로서 司法研修院을 그냥 두는 경우에 교과과정에 대해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重要한 것은 司法研修院의 2년은 基礎教育에 不過하고 이것으로 完成된 法曹人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事實입니다. 계속해서 수습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研修院教育에서 教養教育보다는 專門教育에 重點을 두자는 말씀도 계셨지만 현재와 같이 300名씩 계속 뽑으면 大部分이 辯護士로 나갈 것이고 그런 경우 法曹倫理가 重要한 問題가 될 것이므로 研修院 自體에서 集中的인 倫理教育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法曹人 再教育문제 이에 대해서는 判事研修制度가 활발하고 檢察도 그런 反面에 辯護士에 대한 研修는 1년에 한 2~3日 정도로 尠少적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大學과 연결을 맺어 集中的인 辯護士 研修制度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鄭城鎮檢事님 부탁드립니다.

鄭城鎮(법무부) : 우리 討議主題가 韓國의 法曹教育입니다. 따라서 主題에 접근하는 方法으로 첫째 法曹教育은 法學教育과 대칭되는 判事·檢事·辯護士 그 밖의 職域에 종사할 法曹人 養成을 목적으로 하는 教育이므로 그 점에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이 韓國의 法曹教育인 만큼 外國의 제도나 法學보다 우리의 實情에 맞는 方向으로의 改善方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法曹教育은 大法院 산하인 司法研修院에서 주로 擔當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法曹一元化 추세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方向으로 짐작되므로 장차는 判事기구를 大法院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法官·檢事·辯護士를 養成한다는 基本的인 方向에서 독립된 機構일까 法人이랄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教育의 重點方向인데 現在 우리 社會에 필요한 것은 法曹人으로서의 裁判能力, 搜查能力, 辯護能力 등과 같은 機能的인 것보다는 法曹倫理, 法曹人の 자세, 法曹人の 國家觀에 관련하여 國民이 信賴할 수 있는 法曹人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法曹教育도 이와같은 우리의 實情에 맞는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專門性·技術性과 아울러 法曹倫理를 지닌 韓國적 gentleman 내지 法曹전미의 養成에 注力해야 할 것입니다. 그 方法에 있어서 講義式이라던가 判決書作成 위주보다 全人的인 人格教育, 生活指導教育으로 法曹人을 養成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教科目 편성이나 實務試驗에 있어서도 宋教授님의 견해와는 反對로 講義時間, 法律實務와 같은 機能的인 指導보다는 분

임연구나 seminar를 늘리고 指導의 重點도 面接, 共同生活評價, 論文提出, 人品評價에 注力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教授 選任機構도 없고 教授로는 大部分 部長判事, 部長檢事들이 소속 부처의 발령으로 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時點에 가서는 辯護士, 法學教授를 포함한 教授陣을 구성하고 教授陣 自體審査機構를 두어서 韓國的인 elite 法曹人 養成에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李辯護士님께서 말씀하신 法曹人 再教育 내지 中間研修教育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檢察, 法院에서는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차 體系化하는 단계에 있으며 辯護士 研修 내지 再教育은 좀 더 強化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